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생서기보 정원 1명을 조리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6. 6. 5. ~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및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별표 1 제2호의 전남동부보훈지청 및 전남서부보훈지청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를 “13”으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를 삭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7”로 하고, 운전서기보 2 다음에 “조리서기보 1”를 신설하며, “위생서기보 1”를 삭제, 농림운영서기보 “4”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u>12</u>	<u>13</u>	+1
전기운영주사보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 통신서기보	<u>15</u>	<u>17</u>	+2
·	·	·	
조리서기보	<u><신 설></u>	<u>1</u>	+1
위생서기보	<u>1</u>	<u><삭 제></u>	-1
·	·	·	
·	·	·	
농림운영서기보	<u>4</u>	<u>3</u>	-1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